



AX TAX 자료실

급여·원천세 월마감 검토 킷 해설서

법령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 담당 세무사 감수 반영 2026년 9월 26일 · 근거 번호(L01 등)는 「01-법령근거표」와 같습니다
사례에 나오는 사람과 회사는 모두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 1. 이 킷을 이렇게 만든 이유

급여 마감에 쓰는 엑셀 서식은 이미 많습니다. 급여대장, 일용노무대장, 사업소득 역산표, 네트 급여 계산기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합니다. 대부분 잘 만든 서식이고, 항목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받아 쓰다 보면 비슷한 곳에서 막힙니다. 식대 칸에 20만원 한도가 걸려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 올해도 그대로인지 파일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급여대장은 급여대장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또 따로 만들다 보니 세 숫자가 어긋나도 제출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계산은 파일이 해 주지만 확인은 여전히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이 킷은 계산기가 아니라 검토용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이 이미 계산한 숫자를 신고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는 용도입니다. 시중 서식과 다른 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킷에 들어간 수치와 기한마다 근거 조문과 법제처 원문 링크, 확인일을 붙였습니다. 한도나 세율이 바뀌면 「0_기준값」 시트 한 곳만 고치면 되고, 고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둘째,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숫자를 한 표에 놓고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차이가 나면 줄 전체가 빨강게 표시되고, 그 줄에서 흔히 원인이 되는 곳을 함께 보여 줍니다.

셋째, 고객정보를 넣지 않고 쓰는 AI 프롬프트를 붙였습니다.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적었습니다.

넷째, 이 해설서는 사용법보다 실수 사례에 분량을 더 썼습니다. 월마감에서 실제로 틀리는 곳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 지점을 알고 보면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먼저 밝혀 둡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실지 않았습니. 분량이 크고, 급여 프로그램이 이미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소득세는 급여 프로그램이 낸 값을 그대로 넣어 대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2. 월마감이 흔들리는 곳

한 달 급여 마감은 대체로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근태를 마감하고, 급여를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냅니다.

이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비과세 판정**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처럼 매달 반복되는 항목은 한 번 설정해 두면 요건을 다시 보지 않게 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요건이 깨진 경우가 그대로 비과세로 남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상용인지 일용인지,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처음에 잘못 잡으면 세율과 신고 코드, 제출할 명세서가 전부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서류 사이의 정의 차이**입니다. 같은 상용 근로소득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간이지급명세서의 금액은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숫자가 어긋나는 게 정상인지 오류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킷의 시트는 이 세 곳에 맞춰 나눴습니다. 비과세는 「3_비과세검토」, 소득 구분은 「2_소득구분」, 서류 사이의 대사는 「4_3자대사」가 말합니다. 기한은 「1_월마감순서」에서 계산합니다.

■ 3. 자주 틀리는 지점과 실수 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가상입니다. 다만 사례마다 짚는 지점은 실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로 골랐습니다.

사례 1. 식대 한도 초과분을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빼 버렸다

가상 사업장 '예시상사'의 직원B는 매달 식대 25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므로(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L01) 5만원은 과세 급여입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는 제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따로 작성할 때 생겼습니다. 담당자가 "식대는 비과세"라고 기억하고 식대 25만원을 통째로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세 급여가 5만원 적게 들어갔습니다.

킷의 샘플 데이터에는 이 실수를 일부러 넣어 두었습니다. 「4_3자대사」를 열면 상용 근로 '과세 급여' 줄이 빨강게 표시되고, 대장과 명세서의 차이가 50,000원으로 나옵니다. 명세서 칸을 8,100,000원으로 고치면 '일치'로 바뀝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적는 칸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작성방법, L57). 빼는 것은 비과세 금액이지 식대라는 항목 전체가 아닙니다.

사례 2. 자가운전보조금을 신고서 총지급액에 넣었다

직원A는 본인 차로 거래처를 다니고 매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받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L02).

이번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쪽에서 어긋났습니다. 신고서의 총지급액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포함해 적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는 뺍니다(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L55). 자가운전보조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3, L07). 반면 식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서 총지급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비과세인데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야 하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킷은 「3_비과세검토」에서 '신고서에서 빼는 비과세'를 따로 계산하고, 「4_3자대사」의 신고서 기준 총지급액에서 이 금액을 빼서 비교합니다. 샘플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세 명의 지급 총액은 9,100,000원이지만 신고서에 적을 총지급액은 8,900,000원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킷을 만들면서 저희도 한 번 틀렸습니다. 샘플 신고서 값을 손으로 적을 때 자가운전보조금을 빼지 않은 지급 총액을 그대로 넣었다가 대사표가 차이를 잡아냈습니다. 표가 사람보다 꼼꼼하다는 걸 만들면서 확인한 셈입니다.

사례 3. 차량 명의가 요건과 다르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다섯 가지로 읽힙니다.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회사 업무수행에 쓸 것, 사내 규칙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것 (L02).

가상 직원 한 명이 배우자 명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 봅시다. 조문 문언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을 이 요건에 바로 넣지는 않고, 사례별로 보류해 판단합니다. 이때 배우자 혼자 명의자인 경우와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인 경우는 사정이 다르므로 나눠서 봅니다.

「3_비과세검토」의 '차량 명의·요건' 칸에는 '충족(본인 소유)', '충족(본인 명의 임차)', '요건 미충족', '배우자 단독명의 (보류)', '공동명의(보류)'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두 보류 선택지를 고르면 킷은 비과세에 반영하지 않고, 확인 메모에 "사례별 판단 전 비과세 미반영(감수 필요·보류)"이라고 적습니다. 과세로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전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덧붙이면, 출장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비과세로 주고 있지 않은지 함께 보십시오. 다섯 번째 요건에 걸립니다.

사례 4.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식대도 받는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L01). 조문 표현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입니다.

샘플의 직원C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식대 10만원도 받습니다. 이 경우 식대 10만원은 한도 안이어도 과세입니다. 「3_비과세검토」에서 '식사 현물 제공'을 '제공'으로 고르면 비과세가 0이 되고 10만원이 과세 전환 칸에 빨강게 표시됩니다.

어떤 날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어떤 날은 현금 식대를 받는 달도 있습니다. 이렇게 섞이는 경우는 제공일 비율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킷에서 '일부 제공'을 고르면 비과세에 반영하지 않고 "월별 실태 확인 대상(감수 필요·보류)"으로 표시합니다. 그 달 실제로 식사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확인한 뒤 담당 세무사가 정합니다.

사례 5. 생산직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걸 놓쳤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는 기준이 자주 바뀌는 항목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액급여 기준이 26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이 3,700만원 이하로 바뀌었고, 2026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같은 영 부칙 제3조, L05). 연 한도는 240만원 그대로입니다.

예전 기준을 넣어 둔 서식을 계속 쓰면 대상자가 빠지거나 남습니다. 킷은 이 기준을 「0_기준값」에 두고 모든 계산이 그 칸을 보게 했습니다.

월정액급여는 손으로 넣지 않고 킷이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빼고, 다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를 빼라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후단, L06). 비과세 식대는 복리후생적 급여처럼 제외하는 방향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킷의 산식은 '지급 총액 - 상여 등 부정기 급여 - 비과세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분 - 연장·야간·휴일수당'입니다. 보육수당·출산지원금 비과세분은 이 산식에서 빼지 않았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샘플의 직원C는 기본급 245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 30만원을 받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아 식대가 과세이므로 식대는 빼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285만원에서 연장수당 30만원을 뺀 255만원으로 260만원 이하입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원도 기준 안입니다. 다만 올해 이미 2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이번 달 비과세는 연 한도에서 남은 20만원뿐이고 10만원은 과세입니다.

같은 직원의 기본급이 258만원이었다면 월정액급여가 268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이때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 10만원이 비과세였다면 그 10만원을 빼서 258만원이 되고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과세 식대를 빼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계라서, 킷은 이 산식을 근거와 함께 시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례 6. 석 달 넘게 일한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날이나 시간 단위로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기준이 1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L11).

가상 사례로 물류센터에 일당으로 들어온 일용1이 닷새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처음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지만 3개월을 넘기면서 일용근로자 요건에서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 6% 분리과세가 아니라 상용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신고서 코드도 A03에서 A01로 바뀝니다.

「2_소득구분」의 질문 3이 바로 이 지점을 묻습니다. 일용직 명단이 있는 거래처라면 매달 입사일을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4_3차대사」의 일용 인원 줄 원인 칸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 - 15만원) × 6% × (1 - 55%)로 계산합니다(L12~L15). 일급 25만원이면 하루 2,700원입니다.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L23).

여기서 하루 세액을 계산하는 일과, 실제로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판단하는 일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일급 18만7천원이면 하루 세액은 999원이지만, 열흘치를 한 번에 주면 합산 세액은 9,990원입니다. 일괄 지급할 때 어느 단위로 합산해 1천원을 판단할지는 확인하기 전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킷의 계산기는 하루 세액과 지급 합산 세액을 나란히 보여 주고, 하루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확인 전 자동 판정 안 함(감수 필요·보류)"이라고만 표시합니다.

사례 7. 출퇴근하는 프리랜서

가상의 디자이너1은 용역계약서를 쓰고 매달 고정 금액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 왔습니다. 그런데 주 3일 사무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팀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계약서 이름만으로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에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소득 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L10). 반대로 독립적으로 여러 곳과 계속·반복해서 거래한다면 사업소득 쪽입니다(L16).

사업소득 쪽으로 볼 때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에서 나온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L16~L59).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제공한 용역이 법에서 정한 면세 인적용역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킷의 판단표는 조문 문언에서 뽑은 질문으로 1차 분류만 합니다. 이런 경계 사례를 표 하나로 결론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이고, 소득 구분의 경계는 '감수 필요(보류)'로 남겨 두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질문은 「6_시프롬프트」의 P2로 뽑을 수 있게 했고, 결론은 담당 세무사 몫으로 남겼습니다.

사례 8. 강사료 12만원에 8.8%를 뺐다

가상 거래처가 외부 강사에게 1회 강의료 12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8.8%를 뺐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L18),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L19). 12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8천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84조제4호, L21) 이 건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과세최저한에 걸립니다.

경계 바로 위 금액도 계산해 두겠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를 한 단계씩 나눠 봅니다.

단계	계산	결과
기타소득금액	$125,010\text{원} \times (1 - 60\%)$	50,004원 (5만원 초과, 과세)
소득세 산출	$50,004\text{원} \times 20\%$	10,000.8원
소득세 끝수 처리	원 미만 버림 / 10원 미만 절사	10,000원 / 10,000원
지방소득세 산출	$10,000\text{원} \times 10\%$	1,000원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	원 미만 버림 / 10원 미만 절사	1,000원 / 1,000원

이 금액에서는 어느 끝수 규칙을 써도 소득세 10,000원, 지방소득세 1,000원으로 같습니다. 지급액이 125,030원이면 산출 소득세가 10,002.4원이라, 원 미만만 버리면 10,002원, 10원 미만까지 절사하면 10,000원으로 같습니다. 끝수를 사람마다 자를지 납부 합계에서 자를지는 「O_기준값」의 '끝수 처리 방식'에서 쓰는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고릅니다(L26). 계산기에서 지급액을 125,000원, 125,010원, 125,030원으로 바꿔 넣어 보면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실수도 있습니다. 같은 강사가 같은 곳에 매달 강의를 나간다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감수 필요(보류)'입니다.

사례 9. 12월분 급여를 1월에 줬다

12월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하는 거래처가 꽤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하는 1월에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 12월, 지급 1월로 적습니다. 귀속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원천징수했다면 신고서는 귀속월별로 따로 작성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L56).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1~11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5조, L48). 돈이 안 나갔다고 원천징수 의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작성방법에는 12월까지 미지급한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도 12월 지급분으로 적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킷은 담당 세무사 감수에 따라 2026년 지급분에 법 부칙의 반기 제출 기한을 적용합니다(사례 10).

사례 10.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을 잘못 알았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은 담당자가 2026년 9월 지급분을 10월 말에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현재 법 조문(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은 '다음 달 말일'로 적혀 있지만, 부칙에서 상용 근로소득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미뤄 두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종전 규정대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제5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L38). 2026년 하반기(7~12월) 지급분이라면 법정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이 날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다음 날인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L41).

2027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이지만, 2027년(반기납부자는 2028년)까지는 반기 기한 안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유예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제3항제1호, L39).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이미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L37).

「1_월마감순서」는 지급연월의 연도를 보고 이 기한을 자동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지급연월을 2027-01로 바꿔 보면 상용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이 반기에서 매월로 넘어갑니다.

틀렸을 때 드는 비용

실수의 비용도 알아 두면 검토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를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3%와 일수분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L53).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L52). 사례 1처럼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틀린 것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틀린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니(같은 조 제4항) 실제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하십시오.

■ 4. 시트별 사용법

파일을 처음 열면 「5_샘플데이터」에 가상 사업장 9월분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샘플이 들어 있는 상태로 각 시트를 한번씩 둘러보고, 익숙해지면 샘플을 지우고 실제 값을 넣어 쓰시면 됩니다.

칸 색깔은 모든 시트가 같습니다. 회색 칸은 입력, 흰 칸은 자동 계산, 빨간 표시는 확인이 필요한 곳입니다. 시트 보호는 걸지 않았습니다. 사무소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시되, 흰 칸을 덮어쓰면 계산이 끊긴다는 점만 기억해 주십시오.

0_기준값

킷에 쓰이는 한도·세율 16개와 대사 허용 오차가 모여 있습니다. 줄마다 근거표 번호, 근거 조문, 법제처 원문 링크, 확인일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 값과 확인일을 고칩니다.

아래쪽에는 공휴일 목록이 있습니다. 세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L41) 기한 계산에 이 목록을 씁니다. 2026년과 2027년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미리 넣었습니다. 2027년 설날(2월 7일)과 추석(9월 15일), 노동절·제헌절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부처님 오신 날(5월 13일)처럼 공식 목록 원문과 하나하나 대조하지 못한 날에는 '확인 필요'를 붙였습니다(L58). 임시공휴일은 정부 발표를 보고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끝수 처리 방식'은 세액의 10원 미만을 어디서 자를지 정하는 칸입니다.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을 거둘 때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47조, L26). 사람마다 잘라 합칠지, 원 단위로 합친 뒤 납부 합계에서 자를지는 쓰는 신고·납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킷은 한쪽을 일률로 적용하지 않고 '합계(납부액) 10원 미만 절사'(기본값)와 '인별 10원 미만 절사' 가운데 고르게 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4_3자대사」 아래 '끝수 처리 영향'에 금액으로 나옵니다.

'3자 대사 허용 오차'는 기본값이 0원입니다. 끝수 처리 방식을 맞췄는데도 10원 단위 차이가 반복된다면 10으로 바꿔 쓰십시오.

1_월마감순서

지급연월과 반기납부 여부, 급여 지급일을 넣으면 열 단계의 기한이 계산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와 상용 근로를 나눠서), 연간 지급명세서까지 들어 있습니다. 끝난 단계의 '완료' 칸에 Y를 넣으면 그 줄 글씨가 회색으로 흐려집니다.

반기납부 여부를 Y로 바꾸면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기한이 7월 10일과 1월 10일로 바뀝니다.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하고(금융·보험업 제외),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L33). 아래쪽 '반기납부 판정'에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넣으면 평균을 내서 요건을 봐 줍니다. 요건을 채워도 승인 없이는 반기납부가 안 된다는 점을 판정 문구에 함께 적었습니다.

2_소득구분

질문 다섯 개에 Y/N으로 답하면 근로소득(상용),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적용역) 가운데 하나로 1차 분류하고, 원천징수 방식을 옆에 보여 줍니다. 고용관계도 사업성도 없고 일시적 인적용역도 아니라고 답하면 '판단 보류'가 나옵니다.

그 아래 요약표는 소득별로 원천징수 계산식,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신고서 코드, 월별·연간 제출물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맨 아래 검산기는 일용, 사업, 기타소득의 세액을 손으로 다시 맞춰 볼 때 씁니다.

3_비과세검토

금액은 「5_샘플데이터」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고, 요건만 이 시트에서 고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출산지원금,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다섯 항목을 봅니다.

한도를 넘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금액은 '과세 전환' 칸에 빨강게 나옵니다. 요건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맨 오른쪽 '확인 메모'에 "자녀 수 미입력"처럼 적어 줍니다. 메모 칸만 훑어도 이번 달 손봐야 할 사람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식사 일부 제공, 배우자 단독명의·공동명의 차량처럼 보류 항목을 고르면 메모에 '감수 필요·보류'가 붙고, 시트 위쪽에 보류·미입력 건수가 나옵니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고, 6세 판정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입니다(L03). 한도는 근로자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다니는 회사에서 같은 자녀(4세)에 대해 보육수당을 월 20만원씩 받는다면, 남편 회사와 아내 회사 모두 그 직원에 대해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20만원을 나누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받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 전액 비과세이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L04).

4_3자대사

급여대장 열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명세서·납부서 열에 실제 제출(예정) 값을 넣습니다. 상용 근로, 일용, 사업, 기타소득을 코드별로 나눠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를 비교하고, 마지막 줄에서 소득세 총합계(A99)와 실제 납부액을 맞춥니다.

상용 근로의 총지급액은 두 줄로 나눠 대사합니다. 신고서 기준(비과세 포함, 제출면제 비과세 제외)과 간이지급명세서 기준(비과세 제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례 1과 사례 2가 여기서 걸립니다.

표 아래 '끝수 처리 영향'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인별 절사와 합계 절사 두 방식으로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차이가 있으면 빨강게 표시되니, 신고·납부 프로그램이 어느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확인하고 「0_기준값」의 설정을 맞추십시오.

서류에 없는 값은 '해당 없음'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입력 칸을 비워 두면 '입력 대기'로 표시되니, 해당 소득이 없는 달에는 0을 넣으십시오. 2026년 상용 간이지급명세서처럼 반기로 내는 자료는 6개월 합계로 맞춰야 하고, 이때 급여대장 쪽도 6개월 합계여야 합니다.

5_샘플데이터

실제로 쓸 때 입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줄에 한 사람씩, 소득 구분을 목록에서 고르고 지급 항목을 넣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소득세는 급여 프로그램 값을 그대로 넣고, 일용·사업·기타소득 세액은 킷이 계산합니다. 15명까지 들어갑니다.

이름 칸에는 실명 대신 '직원1'처럼 사내 코드를 쓰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칸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6_AI프롬프트

입력 규칙 네 줄과 점검 프롬프트 다섯 개가 있습니다. 쓰는 법은 다음 장에 따로 적었습니다.

■ 5. AI를 쓸 때의 선

월마감 검토에 AI를 쓰면 편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사 차이의 원인 후보를 좁히거나, 거래처에 보낼 확인 질문지를 만들거나, 이번 달 제출물 목록을 다시 훑는 일입니다. 다만 선을 먼저 정해 두지 않으면 편의보다 위험이 커집니다.

첫 번째 선은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실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는 넣지 않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화면을 캡처해 통째로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합니다. 이름은 직원1, 상호는 거래처A로 바꾸고, 금액은 검토에 꼭 필요한 합계만 넣습니다. 킷의 프롬프트는 모두 이 규칙을 전제로 썼습니다.

두 번째 선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AI가 말한 세율, 한도, 기한은 그대로 쓰지 않고 「0_기준값」과 근거표에 대조합니다. 조문을 인용했다면 법제처 원문을 직접 열어 봅니다. 프롬프트마다 "세율이나 한도를 새로 만들어 내지 마라",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 필요라고 써라" 같은 문장을 넣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써 보면 AI는 그럴듯한 한도를 자신 있게 틀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은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같은 판단은 AI에게 결론을 묻지 않고,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까지만 씁니다. 프롬프트 P2는 마지막 줄에 "최종 판단: 담당 세무사"라고 적게 해 두었습니다.

다섯 개 프롬프트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P1은 대사 차이가 났을 때 원인 후보를 좁힙니다. P2는 소득 구분이 애매한 사람의 사실관계 질문을 만듭니다. P3은 거래처에 보낼 비과세 요건 확인 질문지를, P4는 월마감 자료 요청 안내문을 씁니다. P5는 이번 달 제출물 목록을 점검합니다. 각 프롬프트 옆에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적었습니다.

■ 6. 이 킷이 하지 않는 것

킷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연말정산, 퇴직소득, 4대보험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근거표에 참고로만 적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은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종교인소득, 봉사료, 소득처분 상여도 범위 밖입니다.

판정 결과는 조문 문언에 따른 1차 분류입니다. 담당 세무사 감수(2026년 9월 26일)에서 아래 항목은 '보류'로 정해, 킷이 자동으로 결론 내지 않고 '감수 필요(보류)'로 표시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
- 현물 식사 제공일과 현금 식대가 섞이는 달의 식대 비과세(월별 실태 확인 대상)
- 배우자 단독명의·공동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사례별 판단)
- 일용근로 소득부징수를 1일 세액으로 볼지 지급 건 합산 세액으로 볼지

아래 항목은 감수를 거쳐 킷에 반영했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실제 영역이 법정 면세 인적용역인지로 판단한다는 주의문
- 보육수당 한도는 근로자별 적용(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양쪽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생산직 비과세의 월정액급여에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는 산식
- 끝수 처리를 인별로 일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선택, 차이는 대사표에 표시
- 2026년 지급분 상용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2026년 하반기분 기한 2027년 2월 1일
- 신고서 총지급액과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의 분리 대사
-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참고용 계산값일 뿐 공단 고지액 산출값이 아님

그래도 남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생산직 비과세의 대상 직종 해당 여부, 월정액급여에서 보육수당·출산지원금 비과세분을 어떻게 다룰지, 개별 영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봐야 합니다. 2027년 부처님 오신 날 등 일부 공휴일은 공식 목록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7. 법령 기준과 출처

이 킷의 모든 수치와 기한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정했습니다.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제24호의4서식),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국고금 관리법과 시행령,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했고, 2027년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 발표를 함께 봤습니다. 조문별 원문 발체와 링크는 「01-법령근거표」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처럼 이미 공포되었지만 아직 적용 전인 사항은 '개정 예정'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법이 바뀌면 「0_기준값」의 값과 확인일을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 부록. 01-법령근거표

킷과 해설서의 수치·기한은 아래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해 정했습니다. 확인일은 모두 2026년 9월 26일입니다. 조문 링크는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A. 비과세 (3_비과세검토 시트)

#	항목	내용	근거
L01	식대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식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L0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차량 + 직접 운전 + 업무수행 이용 + 실제여비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L03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6세 판정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L04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분 전액 비과세. 사용자와 특수관계인(개인사업자: 친족 / 법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은 제외. 횡수는 사용자별로 계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1)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L05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상 직종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L06	월정액급여의 범위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① 상여 등 부정기 급여 ② 실비변상적 급여(령 §12) ③ 복리후생적 급여(령 §17의4) ④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선원 생산수당 포함)를 뺀 금액. 킷 산식: 지급 총액 - 부정기 급여 - 비과세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분 - 연장·야간·휴일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후단 , 같은 영 제17조의4
L07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비과세 근로소득 중 법 제12조제3호 가~사목·카·타·하·너·버·저목, 령 제12조제2~4호·제8호(자가운전보조금 포함)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빠짐. 식대(러목)·보육수당·출산지원금(머목)·생산직 수당(더목)은 제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B.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계산 (2_소득구분 · 5_샘플데이터 시트)

#	항목	내용	근거
L10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L11	일용근로자의 범위	날·시간 단위로 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 중,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이면 제외(현장 지휘·기술·사무·건설기계 운전 등 상시 업무자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L12	일용근로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L13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L14	일용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소득세법 제59조제3항
L15	일용근로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공제 적용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차감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	항목	내용	근거
L1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제15호(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용역 공급 소득.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용역이 법정 면세 인적용역인지 판단 (L59)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L17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 (외국인 직업운동가 특례 20%는 킷 범위 밖)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L18	인적용역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강연·방송 심사·전문가 용역·그 밖의 수당성 용역의 대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L19	인적용역 기타소득 필요경비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L2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그 밖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L2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4조제4호
L22	분리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L23	소액 부징수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단, 인적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예외(1천원 미만이어도 징수)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L2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L2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근로자 신청 시 80%·120%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L26	끝수 처리	국고금 수입·지출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분할 징수·수납 시 분할금액 끝수는 최초 수입금액에 합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항

C. 신고·납부·제출 기한 (1_월마감순서 시트)

#	항목	내용	근거
L30	원천세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L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와 함께 제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분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제2항
L32	반기별 납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1월 10일).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은 반기납부 불가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L33	반기별 납부 요건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 + 관할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상시고용인원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신청: 반기 직전 월 1일~말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제3항
L3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가능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L3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
L36	연간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폐업·해산은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

#	항목	내용	근거
L37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3호
L38	간이지급명세서 — 상용 근로소득	2026.12.31까지 지급분: 종전 규정대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7월 말·1월 말). 2027.1.1 이후 지급분: 다음 달 말일(매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법률 제19196호(2022.12.31) 부칙 제6조제2항·제5항 (2025.12.23 개정)
L39	2027년 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유예	2027년(반기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을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없음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3항제1호
L40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간주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L41	기한 특례	기한이 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1항
L48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1~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12월 31일 지급 의제. 12월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안 주면 2월 말일 지급 의제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제2항
L49	연말정산 시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2월분 미지급·없음이면 2월 말일).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L50	임금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L51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전자문서 포함)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L58	공휴일·대체공휴일	공휴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당일·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관공서),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 기독탄신일, 임기만료 선거일 등. 대체공휴일: 국경일·부처님 오신 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이 토·일과 겹치거나, 설·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향」
L59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시행령 제42조 각 호의 용역.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강연성 용역, 연예 감독·연출, 학술 용역, 교수, 직업운동가, 모집수당, 저작권 사용료, 교정·번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D. 가산세 (해설서 참고용 — 시트 계산에는 쓰지 않음)

#	항목	내용	근거
L5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내 0.5%),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0.25%(1개월 내 0.125%), 간이지급명세서 0.25%(1개월 내 0.125%). 불분명·사실과 다름: 지급명세서 1%, 일용·간이 0.25%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L5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경과일수×1일 10만분의 22. 한도: 미납세액의 50%(3%분과 일수분 합계는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E. 서식 기준 (3자 대사표의 열 정의)

#	항목	내용	근거
L5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코드	근로: A01 간이세액 · A02 중도퇴사 · A03 일용근로 · A04 연말정산 · A10 가감계 / 퇴직 A20 / 사업: A25 매월징수 · A26 연말정산 · A30 가감계 / 기타: A42 그 외 · A40 가감계 / A99 총합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L55	신고서 총지급액	비과세·과세미달 포함.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L07) 금액은 제외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라목
L56	신고서 귀속·지급연월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은 귀속월별로 별지 작성. 반기납부자는 귀속 = 반기 개시월, 지급 = 반기 종료월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 1·2
L57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지급액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식사대 등)을 뺀 금액. 총지급액 = 급여 등 + 인정상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작성방법 3.가·사

F. 4대보험 (참고 — 킷의 계산·대사에는 쓰지 않음)

#	항목	내용	근거
L4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2026년 요율	근로자·사용자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 2027년 5.00%부터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 이후 6.5%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법률 제20903호(2025.4.2) 부칙 제4조제1항
L4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조문 미대조)
L44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1만분의 719(7.19%), 근로자·사업주 각 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L45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L46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L47	산재보험료율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